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공포장,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97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 무공포장,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 ·	2

I. 제안경위

1. 제출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2. 제출일 : 2024. 10. 29.
3. 회부일 : 2024.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인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7. (생략) <u><신설></u>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 ----- -----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무공포장수상자: 무공포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포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u>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 18. (생 략)

② ~ ⑥ (생 략)

제6조(등록 및 결정) ①·② (생 략)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8의2. 보국포장수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포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
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포
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
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
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포장
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 1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 및 결정)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2. ~ 4. (생 략)

② (생 략)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2. · 3. (생 략)

④ (생 략)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무공수훈자, 무공포장수상자, 보국수훈자, 보국포장수상자,-----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

-----.

1. -----무공수훈자, 무공포장수상자, 보국수훈자, 보국포장수상자,-----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¹⁾

○ 현행 「상훈법」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하여 서훈을 구분하고 있으며,²⁾ 포장은 훈장에 다음 가는 훈격임.³⁾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6. (생략)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상훈법」 제3조(서훈의 기준)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상훈법」 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5조(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22조(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 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24조(보국포장·예비군포장) 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무공·보국 훈장·포장 구분〉

구 분	훈 장	포 장
무공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	· 국토 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보국	·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자료 : 국가보훈부

-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고, 무공포장은 ‘국토 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됨.
-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되며, 정부포상업무 지침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 보국훈장이,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 보국포장이 수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은 ‘전투 참가’라는 질적인 기준으로, 보국훈장과 보국포장은 재직기간이라는 양적인 기준으로 일응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사람에게 수여한다.

〈무공·보국훈장 등 서훈기준〉

구분	상훈법 규정	정부포상업무 지침	인원
무공훈장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	-	89,252
보국훈장	·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 재직기간이 33년 이상 군인 및 군무원	49,226
무공포장	· 국토 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	10,452
보국포장	·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군인 및 군무원	20,922

주 : 무공·보국훈장 인원은 보훈부 등록 인원 기준

자료 :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여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보훈보상의 원칙,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조).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이나, 그 이전에 ‘희생과 공헌의 정도’는 국가유공자의 대상이 되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상훈법」은 서훈의 기준으로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상훈법」이 일응의 서훈기준을 통하여 무공·보국수훈자와 무공·보국포장자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공·보국수훈자에 더하여 무공·보국포장자까지 국가유공자에 포함할 것인지는 먼저 무공·보국수훈자의 공헌의 정도와 비교하여 무공·보국포장자의 공헌의 정도가 국가유공자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의 공헌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기존의 다른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와 비교하여 그에 상응하는 공헌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2024. 10월 말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4조의 적용 대상 등 보훈대상자(본인 기준)는 551,569명으로 이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는 각각 12,301명, 42,602명(2.23%, 7.72%)임.

2024년 10월말 기준 무공포장 수여자는 10,452명, 보국포장 수여자는 20,922명, 총 31,374명으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편입할 경우 현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의 57.1%, 총 보훈대상자의 5.7%에 해당하는 인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됨.

○ 무공·보국포장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생활조정수당,

4) 「상훈법」 제3조(서훈의 기준)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의료, 요양, 교육, 취업 등 보훈혜택을 지원할 경우, 희생과 공헌의 정도가 국가유공자에 미치지 못하여 상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이등급 미달자,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

- 국가보훈부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개정안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의료·요양·교육·취업 등 지원 시 향후 5년간 5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는데, 무공·보국포장자 뿐만 아니라 상이등급 미달자(68,159명), 참전유공자(113,200명⁵⁾) 등 유사 요구 계층의 지원 확대까지 감안할 경우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 보훈보상의 원칙, 서훈 대상자의 공적 정도, 국민 정서 및 사회적 공감대,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무공·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훈장’ 수여자와의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고, 상이등급 미달자, 참전유공자 등 지원확대 요구 계층 및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5) 참전유공자로서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제일학도의용군인·지원공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 중 한 가지 이상 경험된 자를 제외한 현황(일반참전유공자, '24.10.)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 1

보훈대상자 현황

(2024.10월말 기준, 단위 : 명)

대 상 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832,913 (63,146)	551,569 (35,637)	281,344 (27,509)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8,954	5	8,949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고엽제후유증)‡	276,209 (63,146)	105,052 (35,637)	171,157 (27,509)
무공·보국수훈자	138,478	54,903	83,575
재일학도의용군인	286	6	280
4·19혁명사망·희생·공로자	888	384	504
순직·공상공무원	14,607	3,216	11,391
특별공로순직자	16	0	16
6·18자유상이자	368	17	351
지원순직·공상군경, 지원순직·공상공무원	2,826	2,232	594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8,617	6,248	2,369
참전유공자(6·25전쟁)	34,572	34,572	0
참전유공자(월남전쟁)	169,426	169,426	0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	1,054	1,054	0
고엽제후유의증	48,043	48,043	0
고엽제후유증2세	179	179	0
5·18민주유공자(사망·행불·부상·희생자)	4,488	3,422	1,066
특수임무유공자(사망·행불·부상·공로자)	3,925	2,833	1,092
중·장기복무제대군인	119,977	119,977	0

주. 제적(국적상실), 등급기준미달자, 단순수훈자, 희생자력 제외

† 합계는 등록대상별 현황의 합계. 실인원이 아님. ()는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 (고엽제후유증)은 국가유공자에우법상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에 포함(중복합산 안함)

-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등록된 대상자 현황

참고 2

정부포상 종류

훈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포장
 무궁화대훈장	등급없음 수여대상 : 대통령·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건국포장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국민포장
 무궁훈장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근정훈장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근정포장
 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수교훈장	평화대장, 평화장	홍인장	승례장	창의장	숙정장	수교포장
 산업훈장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새마을훈장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새마을포장
 문화훈장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체육훈장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체육포장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혁신장	옹비장	도약장	진보장	

개인표창 수장



대통령표창 수장



국무총리표창 수장

단체표창 수치



대통령표창 수치



국무총리표창 수치

* 출처 :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참고 3

추가 재정소요(국가보훈부 추계)

□ 추가재정소요 총계 : 연평균 10,392백만원, 5년간 51,962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생활조정수당	4,223	4,223	4,223	4,223	4,223
교육지원	159	159	161	161	160
취업지원	6	6	6	6	6
의료지원	567	599	633	669	707
대부지원	2,181	2,181	2,181	2,181	2,181
요양지원	97	97	97	97	97
재가복지	3,798	3,366	2,985	2,649	2,349
장례서비스	61	61	61	61	61
합계	11,092	10,692	10,347	10,047	9,784

□ 생활조정수당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인원(명)	1,210	1,210	1,210	1,210	1,210
단가(천원)	242~370	242~370	242~370	242~370	242~370
소요예산(백만원)	4,223	4,223	4,223	4,223	4,223

* 인원 : 포장 수여자(31,374명) × 무공보국수훈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비율(무공 10.44%, 보국 0.57%), 단가별 인원 비율 준용

* 단가 : '24년 현 단가(월 242~370천원)

□ 교육지원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인 원	91	89	88	86	84
단 가	1.75	1.79	1.83	1.87	1.91
소요예산	159	159	161	161	160

* 인원 : 포장 수여자(31,374명) × 무공보국수훈자 교육지원 비율(0.31%) × 5년 평균증감율(△2.0)

* 단가 : 최근 5년간 평균 증감율(2.3%) 적용

□ 취업지원(취업능력개발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인 원	32	32	32	32	32
단 가	0.2	0.2	0.2	0.2	0.2
소요예산	6	6	6	6	6

* 인원 : 포장 수여자(31,374명) × 무공·보국수훈자 취업능력개발비 지원 비율(0.1%)

* 단가 : 최근 5년간 무공·보국수훈자 평균 지원단가

□ 의료지원(보훈병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대상인원(명)	11,891	11,891	11,891	11,891	11,891
수진횟수(회)	0.6	0.6	0.6	0.6	0.6
진료단가(원)	79,417	83,943	88,728	93,786	99,131
소요예산(백만원)	567	599	633	669	707

* 대상인원 : 포장 수여자(31,374명) × 국가유공자 등록률(무공수훈자 41.56%, 보국수훈자 69.1%), 지원대상은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로 가정

* 수진횟수 : '23년 60% 감면대상자 보훈병원 수진횟수, 2026~2030년 유지

* 진료단가 : '23년 60% 감면대상자 보훈병원 진료단가, 최근 5년 평균증감률(5.7%) 적용

□ 대부지원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인원		31,374	31,374	31,374	31,374	31,374
융자금	직접대부지원율	1.10%	1.10%	1.10%	1.10%	1.10%
	직접대부지원단가	5.6	5.6	5.6	5.6	5.6
	소계	1,933	1,933	1,933	1,933	1,933
이차 보전금	위탁대부지원율	5.71%	5.71%	5.71%	5.71%	5.71%
	위탁대부지원단가	7.7	7.7	7.7	7.7	7.7
	이차보전율	1.80%	1.80%	1.80%	1.80%	1.80%
	소계	248	248	248	248	248
소요예산		2,181	2,181	2,181	2,181	2,181

* 직접대부지원율 : 대부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중 직접대부를 받은 건수 비율(5년 평균)

* 직접대부지원단가 : 직접대부금 ÷ 직접대부건수(5년 평균)

* 위탁대부지원율 : 대부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중 위탁대부를 받은 건수 비율(5년 평균)

* 위탁대부지원단가 : 위탁대부금 ÷ 위탁대부건수(5년 평균)

* 이차보전율 : '24년 국가유공자 예산 이차보전율

□ 요양지원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인원	115	115	115	115	115
단가(천원)	70	70	70	70	70
소요예산(백만원)	4,223	4,223	4,223	4,223	4,223

* 인원 : 포장 수여자(31,374명) × 무공·보국수훈자 요양지원 비율(무공 1.05%, 보국 0.03%)

* 단가 : '24년 현 단가(월 70천원)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인원	1,117	990	878	779	691
단가	3.4	3.4	3.4	3.4	3.4
소요예산	3,798	3,366	2,985	2,649	2,349

* 인원 : 포장수여자(31,374명) × 무공·보국수훈자 지원율(13.5%) 적용, 최근 3년간

무공·보국수훈자 재가복지 지원대상자 감소율(△11.3%) 반영

* 단가 : '23년 1인당 지원금액 기준 산정

□ 장례서비스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인원	29	29	29	29	29
단가	2.1	2.1	2.1	2.1	2.1
소요예산	60.9	60.9	60.9	60.9	60.9

* 인원 : 무공포장·보국포장 수여자(31,374명) × 최근 2년간 무공·보국수훈자 지급비율(0.091%)

* 단가 : '25년 사업 예산 단가 적용(210만원)

